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건호 750

발의연월일: 2020. 6. 19.

발 의 자:기동민·김원이·김영배

조오섭 · 정춘숙 · 박용진

황운하 • 양정숙 • 이정문

이상민 · 한준호 · 인재근

김회재・강훈식・야진(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2022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 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여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14%(2016년의 경우 보험료 수입액의 11% 지원)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

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 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고 지원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고 지원금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국가가 공단에 지원한 국고 지 원금에 발생한 차액의 정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	지원) ①
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u>보험</u>	<u>보험</u>
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	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u>당하는</u>
서 공단에 지원한다. <u><후단</u>	<u>이 경우</u>
<u>신설></u>	국고 지원금은 해당 연도 보
	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
	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
	입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
	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다
	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
	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